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 시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51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 · 이준석 · 이양수 · 김용태 · 김위상 · 서일준
이만희 · 박수민 · 최은석 · 김소희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7. 25.

3. 회 부 일 : 2025. 7. 28.

※ 의안번호 : 1175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다만 제출되는 자료 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제출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

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에 공직후보자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생략)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이 경우 해당 자료에 공직후보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2조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

1)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음.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도 헌법 제17조²⁾에 따른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과 제37조제2항³⁾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수집·보유만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로서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대체 범위·방법 등을 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측에서

2)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 사상이나 신조에 관한 정보, 범죄나 전과사실, 병력 등과 같이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드러내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 내지 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활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부 결정).

판단하여 조치하게 되어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회에서는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열람 등 위원회가 기관측 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 열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⁵⁾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017

5)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3호),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410호)

6) 추가로, 개정안의 자료제출 시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바람직함.